

아동권리보장원 임원(상임이사) 공개모집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발전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아동권리보장원 임원추천위원회

1. 공모 직위 등

직위	인원	주요업무	임기
상임이사 (부원장)	1명	원장 보좌 및 원장이 부여하는 업무 관장	임명일로부터 2년

2. 자격요건

-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춘 자
-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을 가진 자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자
-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권리보장원 「정관」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별첨 참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전형 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서류심사 결과 개별통보,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일시 및 장소 통보)
- (2차) 면접심사: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 심사
* 직무수행계획서를 중심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상세내용 대상자 안내)
(면접심사 결과 개별통보)

4.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소정양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소정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병역필 확인 서류(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그 밖에 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논문, 서적, 상장, 기타 증빙자료 사본 등
-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의 경우 반드시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 상기 제출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

5.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24. 11. 19.(화) ~ 12. 3.(화)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7층(수송동, G타워)

아동권리보장원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부)

- ※ 이메일을 포함한 인터넷·팩스 접수는 받지 않으며, 방문 접수 시 대리인 제출 불가
- ※ 방문·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시('24. 12. 3.(화) 18시)까지 우리 원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방문 접수시간 09~18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 방문 접수 시 연락처(임원추천위원회): 02-6454-8531, 8534

6. 기타 사항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지정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별도 서류에 대한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안내합니다.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 제출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후 즉시 파기 하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자가 제출서류 반환을 요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류를 반환합니다.
 - * 임명이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반환청구 관련 상세내용 합격자발표 시 안내
- 최종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 되는 경우 또는 부정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원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1명 이하인 경우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재모집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개모집 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 내용을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부, ☎ 02-6454-8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9.

아동권리보장원 임원추천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⑦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